

제320회 임시회  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최호정 의원 대표발의)

#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최 호 정  
(국민의힘, 보건복지위원회)

- 운영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 
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입니다.
  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  
5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신  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 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 
-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 
말씀드리겠습니다.
  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
지방의회에 요청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  
대상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
- 이에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관계  
법령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,  
지방공사의 사장, 지방공단의 이사장, 출자·출연 기관  
의 기관장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 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 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